

11. 施設物の安全管理에 관한 特別法 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交通部公告 第1997-169號 1997. 5. 24

주요 골자

- 가.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기관을 건기법에 의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과 국가 또는 지자체 교육기관으로 하고 교육이수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함.
- 나. 정밀안전진단기관 지정신청시 갖추어야 할 장비를 현재는 4개분야 동일하게 되어있는 것을 진단분야별로 구분하여 규정
- 다.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신청시의 구비서류를 명확히 정함.
- 라. 정밀안전진단 지정신청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·인정기준 및 인정학과를 정함.
- 마.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시한을 40일로 정함.
- 바. 준공도서사본 작성·관리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

개정 이유

특별법시행규칙의 제정('95. 6. 3) 시행후 그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불합리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